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결정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9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결정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, 제29조제1항제9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박신0	810205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연락두절되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구직의사없음으로 확인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폐문부재	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하나2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7. 9. ~ 2026. 7. 24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김준호(Tel. 031-231-79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